



LA Office
3435 Wilshire Blvd. Suite 1110
Los Angeles, CA 90010 (Equitable Building)
Tel: (213) 385-4646 (imin)
Fax: (213) 385-4040
E-mail: imin@iminusa.net

Irvine Office
10 Corporate Park Suite 210
Irvine, CA 92606
(Between Jamboree & Beckman)
Tel: (949) 551-4646
Website: www.iminusa.net

Seoul Office
법무법인해냄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71-15
우창빌딩 5층
Tel: 02-541-7232-4
Fax: 02-541-7238



오바마 행정명령

Executive Actions on Immigration

그동안 기다려 왔던 오바마 행정명령이 11 월 20 일에 발표되었다. 2012 년 6 월 15 일에 발표된 서류미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추방유예 조치이후 2 년여만이다. 이 행정명령은 11 월 20 일부터 180 일내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행정명령은 1987 년 레이건 행정부때 단행되었던 이민개혁법 (IRCA) 이후의 최대규모이다.

조만간 시행세칙이 나오게 되면 많은 부분이 구체화 될 것이다.

이번 행정명령에 담고 있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자녀를 가진 서류미비 부모님은 3 년기한의 추방유예 조치와 함께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노동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2010 년 1 월 1 일 이전에 입국했어야 하며 서류 접수일을 기준으로 5 년 이상 체류했어야 한다. 형사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케이스가 가능한지 반드시 확인을 하여야 한다. 지금부터라도 2010 년 1 월 1 일 이전에 입국한 기록들을 하나하나 챙겨두어야 할 것 같다.

둘째, 2012 년 8 월 15 일부터 시행된 청소년 추방유예 조치가 대폭 확대된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추방유예 조치는



LAW OFFICES OF KYUNG HEE LEE, PC

LA Office

3435 Wilshire Blvd. Suite 1110
Los Angeles, CA 90010 (Equitable Building)
Tel: (213) 385-4646 (imin)
Fax: (213) 385-4040
E-mail: imin@iminusa.net

Irvine Office

10 Corporate Park Suite 210
Irvine, CA 92606
(Between Jamboree & Beckman)
Tel: (949) 551-4646
Website: www.iminusa.net

Seoul Office

법무법인해냄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71-15
우창빌딩 5층
Tel: 02-541-7232-4
Fax: 02-541-7238

2007년 6월 15일 이전에 미국에 입국하였어야 하는데 이번 조치로 2010년 1월 1일 이전으로 확대되었다. 또한 만 31세 이전이라는 나이 기준도 없어지고 유효기간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하지만 당초 논의와 달리 추방유예를 받은 청소년의 부모는 이번 행정명령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아쉬움이 남는다.

세째, 그동안 논의되었던 취업비자 (H-1B) 소지자의 배우자 (H-4)도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노동카드 (Work Permit)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고 대학졸업후 받게 되는 OPT 기간을 29개월까지 연장받을 수 있는 전공분야도 확대하기로 하였다. 이렇게 OPT 기간이 늘어나게 되면 대학졸업후 취업비자 (H-1B)를 신청하여 추첨에서 탈락이 되더라도 다시 신청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가 있게 된다. 대학을 졸업하는 분들은 자신의 전공이

29개월까지 OPT를 연장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미리 확인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겠다.

네째, 미국에서 신분을 잃고 6개월 이상을 체류하게 되면 출국후 3년간, 그리고 미국에 1년 이상을 체류하게 되면 출국후 10년간 입국할 수 없게 된다. 또한 미국에 밀입국한 경우에는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더라도 미국내에서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받을 수가 없다.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한국에 가서 이민비자를 받아와야 하는데 위의 기록때문에 미대사관에 면제신청을 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렇게 되면 출국하고 다시 미국에 들어오지 못해 결국 미국에서 나가지 못하게 되었다. 그동안은 시민권자 배우자, 21세 미만의 미혼자녀, 그리고 부모님만이 미국내에서 이민국에 면제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고 한국에 가서 이민비자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행정명령으로 인해 시민권자 가족에만 해당되었던 미국내에서의 면제 (Waiver)가 영주권자 가족에게도 확대된다.

그외에도 투자이민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이민수속기간을 단축함과 동시에 국경경비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또한 중범 기록을 가진 이민자들을 우선적으로 추방하는 조치를 취하게 될 전망이다.

이번 행정명령은 내년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400만명 이상이 이번 조치로 혜택을 보게 된다. 따라서 시행과 함께 많은 케이스가 한꺼번에 신청될 것이므로 보인다.



LA Office

3435 Wilshire Blvd. Suite 1110
Los Angeles, CA 90010 (Equitable Building)
Tel: (213) 385-4646 (imin)
Fax: (213) 385-4040
E-mail: imin@iminusa.net

Irvine Office

10 Corporate Park Suite 210
Irvine, CA 92606
(Between Jamboree & Beckman)
Tel: (949) 551-4646
Website: www.iminusa.net

Seoul Office

법무법인해냄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71-15
우창빌딩 5층
Tel: 02-541-7232-4
Fax: 02-541-7238

**** 수많은 이민자들의 행정유예 신청이 예상되면서 이민국의 서류 처리 속도가 많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객분들께서는 지금부터 필요서류들을 준비하시어 행정명령이 시행됨과 동시에 신속하게 케이스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오바마 행정명령 신청에 필요한 서류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자녀를 가진 서류미비 부모님들을 위하여 간단하게 준비하실 서류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 1. 신청자의 6 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

- 2. 미국 시민권 자녀의 출생증명서
- 3. 영주권 자녀의 제적등본
- 4. 신청자의 미국 거주기록
 - a) 2010 년 1 월 1 일 이후 꾸준히 미국에 체류함을 증명하시는 서류들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 b) 아파트 리스, 은행, 병원기록, 우편물 등 날짜와 신청자의 이름이 나와있는 서류들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 5. 신청자의 법원서류 (형사기록이 있는 경우)
 - a) 과속, 음주운전, 그리고 형사 기록 (criminal record)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법원판결문 (court record)과 경찰기록 (police record)을 준비하여 주십시오.

형사기록이 있으신 분은 신청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와 상의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구체적인 시행세칙이 나오면 추가로 더 필요한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